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한국응용약물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대상)

이 지침은 한국응용약물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.

### 제3조(적용범위)

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### 제4조(용어의 정의)

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(이하 "부당행위"라 한다)라 함은 연구의 제안, 연구의 수행,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.

#### ① 저자됨(저자자격)

1.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, 또는 연구 데이터 획득, 분석,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
2.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 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
3.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
4.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

## 제2장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### 제5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- ① 연구윤리,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부당행위 제보 및 조사에 관한 사항
- ③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 제6조(구성)

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.

### 제7조(회의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

### 제8조(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)

위원회의 간사는 구술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.

### 제9조(조사 착수 및 기간)

- ①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,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(이하 "조사위원회"라고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.
-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(조사위원회의 구성)

-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위원 총 수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며,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조사위원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 위촉한다.
-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,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
### 제11조(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)

조사위원회는 위원회 간사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
### 제12조(판정)

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.

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재심이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.

#### 제13조(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)

- ① 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(이하 "최종보고서"라 한다)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
 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
  3.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
  4. 조사위원 명단

###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

#### 제14조(결과에 대한 조치)

-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처리 결과에 따른 부당한 논문을 게재 취소 할 수 있다.

#### 제15조(운영세칙)

기타,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### 제5장 보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현재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도 필요사항을 적용한다.